

# 우선피항선의 항법에 관한 고찰

\*정 대울

\*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

**요 약** :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.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,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.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,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, 검토하였으며,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.

**핵심용어** : 잡종선, 우선피항선, 부선, 예선, 예인선과 부선, 선박급유선, 우선피항선항법

0

## 우선피항선의 항법에 관한 고찰

2012. 6. 22.

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
심판관 정 대 울



1. 서론 2

- **개항질서법 개정**
  - 2011. 6. 15. 개정, 2011. 9. 16. 발효
- **적용범위 확대**
  - 목적: 개항의 항계 안 => 개항에서
  - 정박의 제한, 항법: 개항의 항계 안 => 개항의 항계안등
  - \*\* 개항의 항계안등: 개항의 항계안 + 항계 밖의 항로, 정박지 등 수역시설
  - 우선피항선 항법: 개항의 항계안등 + 개항의 항계 부근
- **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 개정**
  - 용어 개정: 잡종선 => 우선피항선(잡종선+항내역무선등)
  - 항법 개정: 용어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로 우선피항선항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적절한 항법적용이 요구됨



1

## 목 차

- I. 서 론
- II. 우선 피항선의 정의와 항법
- III. 우선 피항선의 사고사례
- IV. 결 론



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 3

- **우선피항선의 정의**
- 2. 우선피항선(優先避船舶)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 - 가. 부선
  - 나. 단정
  - 다.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
  - 라. 예선
  - 마. 예인선과 부선(예인선에 결함되어 운항하는 알함부선은 제외한다)
  - 바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
  - 사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(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)
  -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



\* 저자 : 정대울 dychong@korea.kr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4

### ● 기존 "잡종선"의 정의와 비교

- ▶ 우선피항선의 정의 중 아래의 "가, 나, 다 및 아목"은 잡종선의 정의와 같음
  - 가. 부선
  - 나. 단정
  - 다.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
  -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
- ▶ 라, 마, 바 및 사목 : 항내역무선을 우선피항선에 포함시킴
- ▶ 문구 "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" 삽입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7

### ● 예인선과 부선

- ▶ 예인선의 부선 예인방법
  - 선미예인, 접현예인, 압항예인
  - 개정 개항질서법 : 우선피항선에서 "압항부선" 제외
- ▶ 기타 국내법
  - 선박직원법 : 예선, 압항예·부선
  - 선박안전법 : 예인선, 부선
- ▶ 선박검사증서 상 선박용도 표기 지침(12. 1. 3, 해사기술과)
  - 부선 : 33종 중 압항부선 13종
  - 예인선 : 기타선 분류 4종(예인선 및 작업선, 예인선, 압항예선, 그리고 예인선 겸 방제선)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5

### ● 예선, 예인선과 부선

- ▶ 차관회의 자료('09. 11. 2)
  - 예선 :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예선(曳船)
  - 예인선과 부선 :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예인선(曳引船)과 부선
- ▶ 차이점
  - 예선 : 개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의 접미작업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
  - 예인선과 부선 : 화물을 적재한 부선의 해상운송을 위해 종사하는 선박
  - 기존 개항질서법 : 제17조제2항에서 "예인선"으로 명시됨
  - 예선과 예인선 : 선박의 크기 및 운항형태 동일, 그 용도에 차이 있음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8

### ● 예인선과 부선

- ▶ 압항예인
  - A형식과 B형식으로 구분
  - A형식 : 예인선과 부선이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을 이루는 형식 (부선에서 예인선을 원격조정하여 항해하는 경우도 A형식으로 간주)
  - B형식 : 예인선이 연결구조를 가진 부선과 연결하여 예인할 수 있고, 한 사람이 5분 이내에 부선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어야 함
- ▶ 우선피항선에 "부선"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?
  - 부선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, 무인 부선의 정박지 정박 중 이동으로 사고 발생 시 부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
  - ※COLREG 상 과실 책임 : 선박, 선박소유자, 선장, 해원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6

### ● 주도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

- ▶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과의 관계
  - 항만수역과 평수구역으로 국한한다고 볼 것인가?
  - 예인선(해상화물운송사업), 급유선(항만운송사업) : "연해구역(국내항해에 한정), 경계지 : 항내 => "우선피항선"에 포함될까?
- ▶ 개항질서법의 적용수역을 확대한 이유는?
  - 인천항의 장안서정박지 : 평수구역 밖에 위치함
- ▶ 우선피항선에 "항내역무선"을 포함시킨 이유는?
  - 항법 적용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잡종선의 범위와 피항의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로 및 항내 수면의 효율성 증대 도모 (개항질서법 찬양회 자료, '09. 3. 13)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9

### ● 예인선과 부선

- ▶ 해운법 상 예인선(항행구역 : 연해)이 부선을 선미예인, 접현예인하여
  - 개항의 항계 안과 개항의 항계 밖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 범위에서 부선을 이동할 경우
  - 연안항해를 할 목적으로 개항의 항계 안, 항로 및 정박지 부근을 항해할 경우
  - 예인선 2척 이상이 대형 크레인을 예인하여 개항에 입출항할 경우
  - 외국인 선장/항해사가 국제항해 종사 예인선이 개항을 출입할 목적으로 부선을 예인할 경우
- ▶ 총톤수 20톤 이상 예인선이 단독으로
  - 개항의 항계 안에서 이동할 경우
  - 연안항해를 목적으로 개항의 항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0

### ● 예인선과 부선

- > 개정 개항질서법 상 우선피항선에서 “압항부선” 제외 적절한가?
  - 마. 예인선과 부선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?
    - ※ 가. 부선, 라. 예선 과 차이가 있는가?
  - => 이런 의미가 아닐까? “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예인선과 부선”
  - 마목의 괄호 안 단서규정의 의미는? 다만, 예인선과 부선이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되는 형식(A형식)의 압항예인선은 제외한다.
  - => 이런 의미가 아닐까?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경우, 선미예인과 접한 예인은 개항의 원활한 선박통항에 장애를 주고 있어 우선피항선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하고, 압항예인선은 일반 선박으로 간주하여 우선피항선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?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3

### ● 선박급유선 등

- > 급유선 등 항내역무선을 우선피항선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?
  - 항내 사정에 잘 알고,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
  - ※ 항만운송관련사업 :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- > 급유선의 경우 “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로 정계하고 있는 개항의항계안등에서만 종사하여야 할 것인가?
  - ※ 개항의 항계 안 및 수역시설을 벗어나 항해할 때만 “동력선”으로 보면 어떨까?
- > 검토 의견 : 급유선 등 항내역무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항행구역 및 운항형태와 관계없이 “개항의항계안등”에서 항해할 때 우선피항선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
- 다만, 우선피항선의 항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1

### ● 유사 우선피항선에 대한 검토

- > “도선선”은 우선피항선인가?
  - 기존 개항질서법:
    - 바.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
  - 개정 개항질서법 : 없음
- > 검토 의견 : 다음과 같이 개정 필요
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
- 자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4

### ● 우선피항선의 항법 (제17조)

-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> 예인선과 부선
  - 다른 동력선보다 속력이 느려 적절한 피항조치가 어려움
  - 선체블록 등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 : 개항을 출입할 때 항로를 이용하여야 함
- > 선박급유선
  -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급유선도 대형화 추세(206상영호 : 총톤수 966톤)
  - 부산항을 정계지로 두고, 울산항, 마산항 등을 출입선박에게 급유
  - 대부분 개항의 정계지를 떠나 항해할 때 항로를 이용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2

### ● 선박급유선 등

- > 급유선의 현황
  -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급유선도 대형화 추세(206상영호 : 총톤수 966톤)
  - 대부분 급유작업 차 개항의 정계지를 떠난 급유선은 항로를 따라 항해
- > 급유선은 정계지가 지정되어 있는가?
- > 다음 급유선 중 어떠한 경우에 우선피항선에 해당될까?
  - 정계지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 및 수역시설 범위에서 작업 차 항해할 때
  - 정계지가 있는 개항 이외 다른 개항으로 항해 차 정계지가 있는 개항의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
  - 정계지가 있는 개항 이외 다른 개항의 항계 안 및 수역시설 범위에서 작업 차 항해할 때
- > 급유선은 “위험물운송선박”인가? => 아니다(제13조제5항 단서규정 신설)



## II.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

15

### ● 우선피항선의 항법 (제17조)

- > 개정의견
-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다만, 우선피항선 중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과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개항을 출입할 목적으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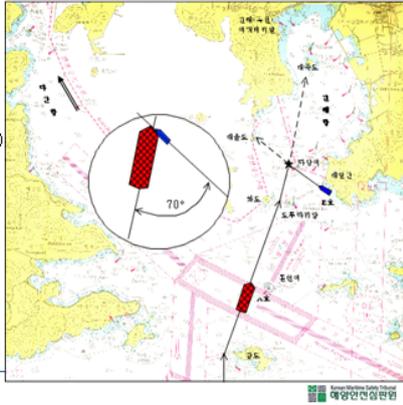


### III. 우선피항선의 사고사례

16

#### 여객선-어선 충돌사건

- > 충돌지점 : 진해항 항계 밖
- > 어선 : 총톤수 2톤
- > 항법 : 횡단항법(어선 피항선)
- > 개정 개항질서법 :
  - 적용수역 확대
  - 우선피항선항법 적용
  - 어선 : 피항선
- ※여객선 : TSS항법 위반 별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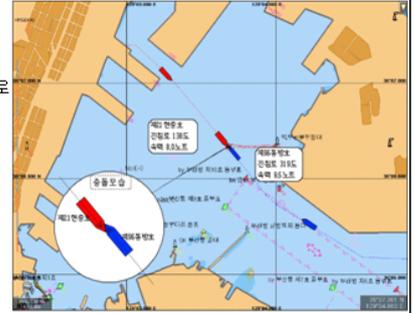


### III. 우선피항선의 사고사례

19

#### 급유선-급유선 충돌사건

- > 충돌지점 : 부산북항 항계 안
- > 항법 : 항내역무선항법
- 21현중호 : 연료유 적재상태로 부산북항 출항, 울산항으로 항해 중
- 96동방호 : 신선대부두 급유작업 후 정계지로 항해중
- > 개정 개항질서법 :
  - 우선피항선항법 적용
- ※문제점 :
  - ①항로를 벗어나 출항하여야 하나? ②위험물운송선박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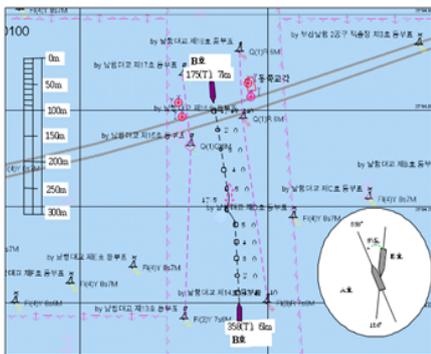


### III. 우선피항선의 사고사례

17

#### 급유선-어선 충돌사건

- > 충돌지점 : 부산2항로 안
- > 급유선 : 총톤수 160톤급
- > 어선 : 총톤수 130톤급
- > 항법 : 항내역무선항법 + 우측통항원칙
- > 개정 개항질서법 :
  - 우선피항선항법 적용
- ※문제점 : 급유선 대형화
- ※간접원인 : 부적절한 항로선정



### IV. 결론

20

- ①예선과 예인선의 차이, ②예인선과 부선의 항행구역 및 운항형태, ③부선 및 예선이 우선피항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예인선과 부선을 우선피항선에 명시한 이유, ④압항부선을 "우선피항선"에서 제외한 이유, ⑤예인선열의 조종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, 법의 개정과정에서 용어 및 문구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함
-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선박급유선은 "우선피항선"에 해당하며, 또한 "위험물운송선박"이 아니지만,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 및 운항형태와 크기를 고려할 때 우선피항선항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함
- 우선피항선항법의 적용수역이 "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"으로서 우선피항선은 이 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대한 통항불방해의무
-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법적행이 요구됨

### III. 우선피항선의 사고사례

18

#### 예인선열-케이블링머리 충돌사건

- > 충돌지점 : 온산항 항계 안
- > 항법 : 우측통항원칙 + 대피(방파제부근항법)
- > 개정 개항질서법 :
  - 우선피항선항법 적용
  - 예인선열 : 피항선
- ※문제점 : 예인선열 조종성능 제한

